제3주제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대안

김성호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대안

김성호 박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 우리나라의 읍 • 면 • 동 현황

- □ 읍·면·동 현황
 - 1949년 이전 : 조선시대에는 面・坊・社・部・曲으로 구분하다가, 1910년에 '면 (面)'으로 명칭 통일(4,322개)
 - 1949년~1961년 : 읍·면 지방자치제 실시
 - 1949년 : 읍 면의회 설치, 읍 면장은 읍 면의회에서 선출
 - 1956년 : 읍 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
 - 1958년 : 읍·면장 임명제로 전환
 - 1960년 : 읍 면장 주민직선으로 환원
 - 1961년 : 읍 면장 직선제 폐지 및 의회 해산, 일선 행정기관으로 전환
 - ※ 동(洞)은 시·읍의 하부행정구역이었으나 읍·면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되고, 읍의 동은 리(里)로 전환
 - 1999년 이후 : 읍·면·동 기능전환 실시
 - 읍·면·동의 쇠퇴 기능과 과다한 인력을 정비하고, 주민자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 ※ 읍·면·동 기능전환(1999년~2002년): 주민등록, 민원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업무만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청소·주택·교통 등 일반적 행정업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현재 읍·면은 371개(기존 722개), 동은 204개(기존 601개)의 사무를 수행), 기능이관으로 생긴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설치

□ 읍·면·동의 위상

-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두며, 읍·면·동장은 시· 군·구청장의 보조기관 성격
- □ 읍・면・동의 기구・인력
 -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장(지방 5급)을 포함 평균 14명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인구구성·산업분포 등 지역적 특색에 따라 업무를 구분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총무·민원·주민생활지원·산업·건설진홍·세무 등으로 분류 하여, 과 또는 담당조직을 구성

□ 읍·면·동의 기능

- 읍·면·동사무소 : 행정기능
 - 중앙정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 전달
 - 민원기능 : 제증명발급, 민원신고 처리
 -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 주민등록 인감관리, 민방위, 재난관리
 - 사회복지기능 :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노인·부녀·아동복지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기능
 -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예식장, 놀이터, 탁아소 등
 - 문화활동 지원 : 전시회, 취미교실, 청소년센터, 영상·음악 감상실 등
 - 여가활동 조성 : 동호회, 레크레이션 활동 등
 - 각종 주민단체활동 지원 :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 소비자보호 : 물물교환, 도·농간 자매결연 등
 - 생활안전 : 교통안전, 청소년지도, 자율방범, 의용소방대 등
 - 지역안전관리 : 축대, 하수구, 맨홀 점검 등
- 행정지원 :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리·반 제도를 운영
 - 읍·면·동 이하에 통·리를, 통·리 이하에 반을 구성하고 그 대표인 통·리·반장을 선출
 - 통·리·반장은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및 요구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

<우리나라의 읍·면·동 현황>

구분	개수	평균인구 (천명)	평균면적 (km²)	평균 통 · 리수	평균 세대수	평균 공무원수	조직규모	주민 자치센터
인비	215	21.0	68.26	38	8,299	25	1~3개 과, 1~9개 담당	132(61%)
면	1,201	4.2	62.61	23	1,900	15	2~9개 담당	579(48%)
동	2,061	19.8	5.02	27	7,665	12	1~4개 담당	1,970(96%)
합계/평균	3,477	14.5	28.82	24	5,713	14	_	2,681(77%)

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2012). 내부자료.

☐ 읍·면·동 주민자치의 추진실태

-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읍·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 ※ 읍·면·동장이 운영책임자로서 소속공무원, 주민대표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
 - ※ 일부 지역에서는 '동주민센터'와의 용어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 '주민회관' 또는 '자치회관'등 의 명칭을 사용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 치위원회'를 구성·운영
 -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이나 공개모 집 등을 통해 선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 면·동장이 결정하며, 시·군·구청장은 수강료 등의 수입을 감안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읍・면 산하의 리(里) 개발위원회
 - 리 개발, 문화·복지, 공동이익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읍·면에 전달하기 위해 설치
 -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 권한은 없으며, 순수 주민자치조직이기 보다 는 읍·면·장의 자문기관 성격

○ 기타 주민자치조직

- 도시지역 :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설치·운영
 - ※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은 아파트 관리에 국한되나, 부녀회는 이웃돕기·환경보호 등 활동범위 가 상대적으로 넓음
- 농촌지역: 영농회, 작목반,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이 활동
- 그 외에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등의 자원봉사단체, 학교운영회 및 어머니회 등의 학교 관련 단체, 새마을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행정지원단체가 활동 중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설치안

- 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
 -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
 -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 고객으로서의 주민에서 적극적인 동네 설계자로의 변화
 - 현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운영 또한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의 존하고 있는 실정
 - ※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비중(2011년): 문화여가(49%), 시민교육(21%), 지역복지(11%), 주민자치(7%), 기타(12%)
 - 지역 내 학교,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 각종 직능조직·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조정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에 대한 보완
 - 시·군·구 통합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 및 특·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은 지방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반대로 민주성을 약화시킬 우려
 -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간극을 좁혀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출하고, 일부 행정서비스의 경우 주민이 공급자이자 수혜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역할을 부여할 필요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22조에 근린자치의 실현을 위한 읍 •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규정
 - 근린 : 주민이 거주하고 상호 교류하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 공동체 단위를 근린 (neighborhood)이라 함(최재송, 2007)
 - 주민자치회 설치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제20조)
 - 주민자치회의 기능 : ①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1조).
 - *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관계 법령, 조계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관련된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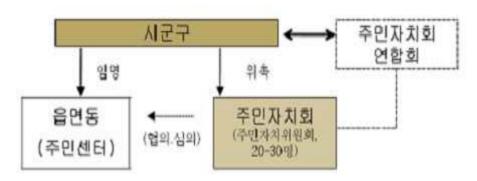
2 G·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방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권한, 행정기관과 관계 등에 따라 총 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형 제시 → 모두 주민자치형 행정기 관(지방자치단체 ×, 법인격 ×)
 - 읍·면·동 단위로 1개 주민자치회를 두되, 특별한 경우(인구가 적고 산재한 지역, 교통 ·통신이 불편한 지역 등)는 분회 설치 가능
 - 3개(안) 모두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총 회를 소집하거나 문서회람 방식 활용 가능
- 추후 관계 법률 검토 및 기초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 모형을 도출할 방침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법률 유권해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에 있어, 향후 각 모형별 세부사항의 변동 가능성 존재
- ① (제1안) 통합형 : 읍 면 동 사무에 대한 협의 심의 및 의결기구
 - 주민자치위원회(의결기구)와 사무기구(집행기구)로 구성
 -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로 전환되나 기존의 기능은 존치하며(평균 공 무원수 14명), 읍·면·동장의 명칭을 '사무장'으로 변경
 - 주민자치회의 협의·심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검토 및 기초의회와 관계를 고려하여 법적 효력을 추후 결정할 방침

<제1안 : 통합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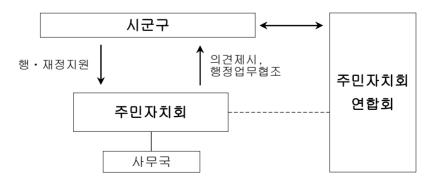
- ② (제2안) 협력형 : 읍 면 동 사무에 대한 협의 심의기구
 - 주민자치회에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신설
 -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존치하며,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사무소와 상호 대등한 관계
 - 주민자치회의 협의·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검토 및 기초의회와 관계를 고려하여 법적 효력을 추후 결정할 방침

<제2안 : 협력형 모델>



- ③ (제3안) 주민조직형 : 주민자치회 사무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
 - 주민의 대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유급직원 또는 봉사자)을 설치·운영하며, 현재 읍·면·동 공무원은 시·군·구로 소속 전환
 - 시·군·구와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
 -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법률 검토 및 기초의회와 관계를 고려하여 법적 효력을 결정할 방침

<제3안 : 주민조직형 모델>



③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의 기관구성

- ① 주민자치위원회(제1안 · 제2안)
- 성격: 협의·심의(제1안·제2안) 및 의결기구(제1안)
- 위원의 정수 : 읍·면·동별로 20~30명의 범위를 원칙으로 하나, 인구 극소 지역 의 경우에는 20명 이하로도 구성 가능
- 위원의 선출
 - 당해 읍·면·동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 당해 읍 면 동 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단체 근무자
- 위원의 선출방법 : 읍·면·동별로 별도의 '위원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선 거관리 및 위원 선출을 담당
 - 구성 : 9명 내외로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 교육지원청, 주민자치위원회 각각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교장 등 교육 관련자로 추천범위를 제한
- 주민, 지역대표성, 전문성, 자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출방식을 다양화
 - i) 통·리장 대표 : 통장은 반장(선거 또는 추첨) 중 호선으로, 리장은 주민직선으로 각각 선출하고, 주민자치위원은 통·리장 가운데 호선 또는 순번제 등으로 선출
 - ii) 일반주민 공개모집 : 공개모집 후,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iii) 직능대표 선출 : 전문가, 직능단체 등을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 각 선출방식별 구성 비율은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선정위에서 결정하도록 함 (공석 발생을 대비하여, 5인 이하의 예비후보 선정)
 - ※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조례에 위임
- 위원의 지위 및 임기
 - 위원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최종 위촉
 - 지위는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로 하며(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지급 가능), 임기는 2년 을 기준으로 연임이 가능
 -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또는 지지정당 표방 금지

- ② 사무기구(제1안 · 제3안)
-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고유사무 또는 위임·위탁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를 설치·운영(제1안·제3안)
 - (제1안) 사무기구의 직원은 시·군·구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
 - (제3안) 사무기구인 사무국을 두고, 유급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구성
 - 주민자치회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복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자치회 사무기구로 전환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사무장'으로 변경(제1안)
 - 사무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 총괄
 - 주민자치회와 사무기구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하여, 사무장 임용시 주민자치회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함

4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사무

- 현행 읍·면·동 사무 中 주민자치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
 -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특성화 사업,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자율방범대 운영, 주민자치·인문교양 등 주민교육,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마을대청소, 자원봉사단 운영, 주민생활 불편사항 접수·건의, 향토방위 관련 업무협조 등
- 시・군・구 사무 中 주민자치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
 - 축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주민소득개발사업,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마을문고 육성·관리, 마을안길 제설작업,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

<현행 읍·면·동 및 시·군·구 사무 中 주민자치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

구 분		향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					
		현행 읍・면・동 사무 中	현행 시・군・구 사무 中				
주민생활 편의에 관한	예 산 사 항	○보안등 관리 ○방역소독, 가축방역 등 위생업무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	○마을 휴양지(해수욕장 등) 관리 ○마을안길 제설작업 ○주차(수급실태조사, 주차장 관리, 요금징수 및 지도·점검 등) 업무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공한지 정비 및 청소				
사항	비 예 산 사 항	○ 마을대청소 ○ 야생동식물보호·산불·수해·재해 활동 ○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 대형폐기물처리신청	○청소년 유해업소,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단속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역 공동체 형성 · 관리에 관한 사항	예 산 사 항	○지역공동체 특성화사업 ○마을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그린포럼 주관 및 교육활동(주민자치, 인문교양, 기술 등)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주민소득개발 및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단체 관리 및 단체운영 지원 ○읍・면・동 각종 행사(마을축제, 체육 대회, 읍・면・동의 날) 추진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마을문고 및 이동문고 육성・관리 ○동호회, 스포츠 활동 등				

			3 2 4 , = 2 5 5					
구 분		향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						
I E		현행 읍・면・동 사무 中	현행 시・군・구 사무 中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청소년 보호계도					
		·집행 · 평가	○ 불우이웃돕기					
지역	нΙ	○부녀자원봉사단, 자율방범대 운영	○지역환경감시체계 운영					
공동체	- i 예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						
형성ㆍ	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신청						
관리에	사	·접수·구호 등 사회복지업무						
관한	항	○ 수재해 이재민발생보고 및 실태조사						
사항		○중·고교생 사회봉사활동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추천						
ᄌᇚᇬ	ı	○홍보, 캠페인 활동						
주민의 이해관		○주민생활 불편사항 접수·건의						
이에진 협의 · 조정		○지역여론 수렴 및 전달						
	, 10		○ 향토유적, 문화재, 지역전통문화유산					
	예		관련 업무					
	산 사 항	│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관광홍보・축제・시설 등 관련업무					
기타		○ 등계도자에 된한 사항	지원					
지역발전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ㆍ새마을					
관련			교육					
사항	비	○적십자회비 모금(타기관 협조)	○농업용수 및 관정 관리업무					
	예	○행정시책 전달(반상회)	○새마을지도자 위・해촉					
	산 사	○행정지원사항(주민상훈추천 등)	○새마을협의회 운영					
	^r 항	○ 향토방위 관련업무 협조						

5 재정 및 감사

○ 재원 : 자체재원 + 의존재원 + 기타재원

- 자체재원 : 회비, 자체 수익사업,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 의존재원 :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

- 기타재원 : 주민 또는 기업의 기부금품 등

○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 감사 규칙 등 관련 규정 준용

6 하부조직 및 연합조직 구성

○ 하부조직 : 통·리 주민총회(필요시 구성)

○ 연합조직 : 주민자치회 연합회

- 법령상 시·군·구 단위의 임의단체로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설치

- 지방자치단체와 힘의 균형을 이루고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지 방의회의 견제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7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 주민자치회에 보조금, 정보, 기술 등 행·재정적 지원
- 주민자치회 전체 사무가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다만, 위탁사무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고, 시·군·구청장이 회계감사를 실시

图 現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現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현행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

구분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모델(안)	
법적근거	시・군・구 조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법률(가칭)	
위촉권자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대표성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위상 및 기능	읍・면・동 행정 자문기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주민자치를 위한 협의·심의 및 의결기구 (주민화합, 지역발전, 위탁사무 처리)	
설치구역	읍・면・동 단위 1개	읍・면・동 단위 1개(분회 가능)	
교육훈련	근거조항 없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연수기회 제공할 의무(법으로 규정)	
연합회	법적근거는 없으나, 기초 또는 광역 단위로 자율 구성	시·군·구 단위 임의단체	

9 시범실시 계획

○ 추진방향

- 현행 제도와의 차별성이 큰 <제1안 : 통합형>에 한하여 시범실시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행 숙과정 평가

○ 대상선정

- 행정안전부와 협의, 선정기준 및 시범실시 규모 결정
- 선정방향
 -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시범실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지역
 - * 인구, 면적, 재정력, 사무공간 확보 등 시범실시가 용이한 지역
 - * 시범실시에 따른 성과분석이 용이한 지역 등

○ 추진일정 및 주체

- 추진일정 :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12월까지
-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방안 마련 : 2014년 1월~2월
-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 추진 : 2014년 3월~6월

3. 지방행점체제개편추진위원회(안) 평가

1) 준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권한 부여 우려

주민자치회9	의 준지방기	사치	단체化는	실질	적으로	자치	3계층저]]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중복행정	및	의사결정	비용	증대	등의	역기능	초래힐	· 위험
존재									

- 준지방자치단체의 정의
 - 주민대표의 선출과 자치권의 일부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자치입법권 등 핵심적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고, 조례제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가진 지 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단체2)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받는 '준지방자치단체'에 해당 → 다수 학자들의 의견
- 주민자치회의 준지방자치단체化는 실질적으로 자치 2계층제 → 자치 3계층제로의 변화를 의미함에 따라,
- 자치계층 증가에 의한 중복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능률의 저하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계층간 거래비용 및 의사결정비용 등이 증가될 위험성 내포3)
- □ 주민자치회에 준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관련 법률 제・개정,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재배분 등 제도가 기능하기 위한 고려사항 과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준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민자

²⁾ 하혜수・최영출・홍준현(2010). "준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적용가능성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한국지 방자치학회.

³⁾ Leemans, A. F.(1970). Changing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Hague: The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 정세욱(1996).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황아란·김성호(2009). "제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와 여론조사의 실증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한국지방정부학회.

치회에 준지방자치단체 자격을 부여할 경우 「지방자치법」의 개정 필수

- 또한, 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자치권을 부여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간 기능・권한 재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이해관계자간 충돌 가능성이 높음 → 정책의 실효성 저하
- □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순수 주민자치조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 2계층을 유지하면서, 시·도와 시·군·구의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설계 운영하는 것이 타당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의 대소사를 주민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며,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생활기능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민밀착형 행정사무(小사무)를 가급적 주민자치회에서 처리 및 제공하되, 주민자치회의 역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언제든 읍·면·동이나 시· 군·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판단
 - 한편, 일본의 경우 주민자치조직인 '자치회'를 준지방자치단체로 운영 중이나, 일부 자치회의 주민에 대한 회비 강제징수, 예산운용의 불투명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제도화에 신중해야 함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안)의 모형별 장·단점 평가

□ (제1안) 통합형

- 읍·면·동 사무소 폐지 → 주민자치회 사무기구로 전환
- 읍·면·동 공무원 → 주민자치회 사무기구 소속으로 전환
- 읍·면·동장 → '사무장'으로 명칭 전환

○ 장 점

- 주민자치회가 집행기능 및 의결기능을 모두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 가능
- 시・군・구에 비해 지역주민 가까이(읍・면・동)에서 지역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
- 시·군·구와 읍·면·동간 중복행정 해소에 유리

○ 단 점

-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임용권이 시·군·구에 속해 있어, 주민자치회의 집행기 구에 대한 인사권 및 통제권 미약
- 읍·면·동 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역량을 갖춘 공무원 임용(배정)의 불확실성(문제 있는 공무원의 처벌수단으로 활용 우려)
- 주민자치회가 의결기능까지 담당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기초의원 의 반발 우려
- 주민자치회에 대한 견제 및 평가기구가 부재하여 독단적인 자치회 운영의 위험 및 주민 의사와의 괴리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제2안) 협력형

- 읍・면・동 사무소 존치
- 읍·면·동장 및 공무원 존치

○ 장 점

- 읍·면·동사무소의 존치에 따른 행정체제 변동 및 주민혼란 최소화에 상대적 유리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기구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읍·면· 동 행정의 민주성·효율성 향상 기대

○ 단 점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협의·심의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 치회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혼란 유발
- 주민자치회의 읍·면·동에 대한 단순 자문기구化 함에 따른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불가능
-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역기능 해소 곤란

□ (제3안) 주민조직형

- 읍・면・동 사무소 폐지
- 읍·면·동장 및 공무원 → 시·군·구로 배치
- 읍·면·동 행정 → 주민자치회 사무국(유급직원·봉사자) 담당

○ 장 점

- 주민자치회 내에 非공무원(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의 집행기능 및 의결기능을 모두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 가능

○ 단점

- 사무국이 비전문가인 지역주민, 유급직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될 경우, 집행기구의 역량 저하에 따른 심각한 주민불편 가중
- 주민자치회에 대한 견제 및 평가기구가 부재하여 독단적인 자치회 운영의 위험 및 주민 의사와의 괴리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시·군·구에 대한 행정업무협조의 대가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음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군·구 예속기관化(관변단체로 전락) 우려
-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폐지에 따라, 읍·면·동 공무원이 시·군·구로 배치됨으로써 시·군·구 공무원의 증대 및 역할 부재 등의 행정 비능률성 초래

3) 시사점

- □ 지역 공동체 정신의 회복,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를 순수 주민자치조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
 -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형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순수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 주민자치회의 기능 과부하, 위원의 무보수·명예직으로서 한계, 자원봉사자의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불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 따라서 읍·면·동 공무원의 소속 및 업무는 현행 유지하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밀착형 기능(사무) 특히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일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 공동체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밀착형 기능(사무)을 주민자치회에서 담당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생활 공동체 활동 사례
 - 현행 읍·면·동 기능 中 : 보안등 관리, 마을대청소, 산불·수해·재해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대형폐기물처리 신청,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문, 마을 주민자치활동 운영, 부녀자원봉사단·자율방범대 운영,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 홍보·캠페인 활동, 주민불편사항접수·건의, 여론수림 및 전달, 행정시책 전달 등을 주민자치회에서 담당

- 현행 시·군·구 기능 中 : 마을안길 제설작업, 마을시설 관리·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 마을축제·체육대회 추진,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마을(이 동)문고 육성·관리, 청소년 보호계도, 불우이웃돕기, 지역환경감시체계 운영 등을 주민 자치회에서 담당
- 기타 :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1조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가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기능(사무) 발굴·담당
- □ 주민자치회의 전체 사무를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 하에 둘 경우, 자발적 동력 저하, 사업 관련 주민갈등 및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 우려
 -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설립·운영 취지와 주민의사간 괴리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음
 - 순수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도모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에 대한 지방정부 및 의회의 관여 최소화 필요
- □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조직으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대표성 확보 중요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에 대한 선거관리 및 선출을 담당할 계획
 - 그러나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대표(주민자치위원)를 선출할 경우, 대표성 문제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 우려, 선출된 주민대표(주민자치위원)와 주민의사간 괴리가 발생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대표 및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 선거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 □ 주민자치회의 운영재원 中 자체 및 기타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감사 규칙을 未적용하는 것이 타당
 -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재원(회비, 수익사업 등) 및 기타 재원(기부금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긴요

○ 따라서 시·군·구 및 읍·면·동과의 '계약'에 의한 위탁·위임사무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감사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4. 외국 사례와 그 시사점

[] 영국

- 영국은 Borough(런던), District와 City(대도시), County(농촌)의 기초정부 하부에 주민자치조직인 Parish 존재 → 법인격 未부여
 - Parish의 인구규모는 매우 다양하여 최소 10명에서 최대 40,000명까지이며, 500명 이하가 약 40%, 5,000명 이상이 약 10%를 점하는 분포
 - Parish는 법인격이 없으며, Parish의회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Parish의 長은 의회 의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

○ Parish의 조직과 재정

- 1972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구 150명 이상인 Parish에는 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인구 150명 미만의 Parish는 주민총회 개최)
- Parish의회는 각 ward(구)에서 선출(직선)된 의원(5명~20명)으로 구성되는데, 평균 9명의 수준이며 임기는 4년(무보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연 3회 내외 개최
- Parish의회에는 유급사무원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Parish에는 비상근 직원을 두거나 1명의 사무원이 여러 Parish를 담당하며, 주민 가운데 5~6명의 자원봉사자가 Parish의원을 보조
- Parish의 재정은 평균 약 20,000 파운드(약 3,600만원) 규모이며, 재원은 수수료, 서비스이 용료, 부가세, 임대수입, 상급 지방정부 지원금 등

○ Parish의 기능과 역할

- 마을 경작지의 할당, 마을회관의 유지·관리, 여가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가로등·주차장·광장·수영장·화장실·보도 등 지역시설의 설치·관리(1972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 '마을 경작지의 할당' 외 권한과 기능을 District 정부와 공유하도록전환)
-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받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권한 보유

- 영국의 Parish는 자치재정권(과세권한, 예산심의권 등)이 없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서, 관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조직권·입법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행정서비스 를 제공
- 영국은 역사적으로 주민자치의 전통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 Parish의 구성원(지역주민)으로부터 회비를 강제 정수하지 않아, 주민들의 호응 정도가 준수한 것으로 평가

2 일 본

- 일본의 자치회는 1991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 사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격체 \rightarrow 사법인
 - 일본의 자치회는 정회(町會), 정내회(町內會) 등으로 불리는데,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적 친목조직에 해당(최근에는 주로 도심 주택단지에서 '자치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町內會는 비도심지역에서 사용)
 - 법인격(사법인) 부여 이유: 과거 자치회는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자치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자치회관 등)은 대표자의 개인명의나 임원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해 왔으나, 이들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지역적 공동활동을 위한 부동산 또는 그 권리 등을 보유하고자, 1991년 4월「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자치회로 하여금 "시・정・촌장 인가를 받았을 때 그 규약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자치회의 조직과 재정
 - 자치회는 3~4개의 부락(部落)으로, 각 부락은 10~15세대의 반(班)으로 구성
 - 일본 자치회(정내회) 조직은 7세기부터 존재해 오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마다 존재할 정도로 그 수가 많고, 구성단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음
 - 내부조직은 총회, 회장회, 협의회로 구성
 - * 총회 : 의결기관으로서, 단위 자치회의 가입주민 전체가 참여
 - * 회장회 : 집행기관으로서, 회장(주민직선) 1명과 회계·감사·간사 등 10명 내외의 무보수·명예직 임원(자원봉사 성격)으로 구성하며, 사업부서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 * 협의회 : 자치회 전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 자치회 예산에 관한 사무 심의, 자치회 결산에 관한 인정, 공민관(지역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자치회의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무의 결정 등을 담당
 - 자치회 재정은 회비수입(세대당 月회비 징수),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사업(공원・가로수

정비 및 관리 등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행정사무를 수탁하여 받는 보조금)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

○ 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일본 자치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요 기능				
주민자치조직	○지역의 공동과제 해결 : 교통안전, 방범, 방재, 비상대책, 재난구조, 쓰레기				
기능	처리, 폐품회수, 병충해구제, 녹화사업, 공해방지 등				
주민자치조직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 : 문화, 스포츠활동, 보건위생, 간호 등				
기능 기능	○지역커뮤니티 양성 : 제례, 축제·운동회, 버스여행, 회보발행, 시설관리 등				
기능	○간이보험 및 기타 수익사업의 운영, 자치회관의 관리·운영				
	○행정보완 : 홍보지, 회람문서 배포를 통한 행정보완, 방범협력, 소방협력,				
행정보조기관	모금협력, 헌혈협력 등				
기능	○행정참여 :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				
	○주민의사 전달 및 진정, 행정사무 위탁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2011).

- 일본의 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하거나, 관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주민자치활동 전개
 - 법인격(사법인)·주민기구·자치권(행정·조직) 등의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도시·농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조직 구성·운영
 - 또한, 일본 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것이 특징
 - 그러나 일부 자치회의 경우, 강제가입·회비징수 및 재정운영의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주민의 선택이 배제된 강제가입과 그에 따른 회비징수 문제, 자치회 운영경비의 횡령 문제 등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방정부는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해 자치회 조직률을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치회를 긴요한 '지역방재조직'으로 활용

③ 프랑스

- 꼬뮨 하부기관인 지구위원회(주민자치조직)의 운영 → *사법인*
 - 프랑스는 꼬뮨 하부에 '지구위원회(지역별로 명칭 상이한 주민자치조직)'이 법인격체(비영리법인)로 존재하는데, 주로 주민-꼬뮨간 매개역할, 꼬뮨의 공공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고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자 역할(빈민 및 무주택자 지원 등)을 담당 → 인구 8만명 이상의 꼬뮨은 설치 의무

○ 지구위워회의 조직과 재정

- 지구위원회의 대표는 꼬뮨의 長이 지명하는 꼬뮨의회의원이 되며, 지구위원회의 위원은 꼬뮨의회의원·지역단체대표·주민대표로 구성
 - * 일반적으로 꼬뮨 부의장(부시장)을 1개 또는 다수의 지구위원회 수장으로 임명ㆍ관할토록 함
- 프랑스「지방자치일반법령」에서는 지구위원회의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 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꼬뮨의회에 재량권을 보장함에 따라, 위원 구성방법과 운영절차가 지역별로 매우 다양
 - * 지구위원회의 의원 구성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지역의 유명인사, 민간협회대표,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시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 자원자 中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하는 곳도 존재(임기 또한 상이)
- 1년에 3회 정도 총회를 개최하여,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지구위원회의 재원은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정부(꼬뮨)로부터의 보조금이 주를 이루며, 비영리법인인 관계로 참가하는 단체들로부터 회비를 징수 → 경상예산과 투자예산(혹은 주민참여기금)을 가짐
 - * Paris市의 경우, 2011년 지구위원회 1개당 약 3,305€(약 500만원)의 경상예산(소모품비, 복사비, 우편요금, 회의용 다과비 등), 8,264€(약 1,200만원)의 투자예산(집기구입, 지구환경 정비 등)을 배정

○ 지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지구위원회는 지역 및 지구문제에 관한 주민의견을 꼬뮨의회에 전달하고, 꼬뮨의회의 정책 결정을 자문하며, 지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대한 평가 및 지역주민의 불만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의 기능을 담당(대부분 수용)
- 프랑스 지구위원회는 자치권이 未부여된 주민자치조직(사법인)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꼬뮨)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 프랑스의 지구위원회는 市政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市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주요 외국의 주민자치회 현황 및 비교>

	구분	행정기	기관형	의회형	주민총회형	자치회형
Ē	법인격	×	○ (사법인)	×	×	○ (사법인)
기관	대표 직선	×	×	×	×	×
의회 또	는 주민총회	×	×	의회구성	주민총회	주민총회, 회장회, 협의회
	재원		부 지원 조금)	수수료, 이용료, 임대수입, 상급정부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보수(보조금) 등		회비, 프로 그램 수강료, 보조금 등
자치	니행 정 권	×	×	0	0	0
자치	치조직권	×	×	0	0	0
자치	조례제정권	×	×	0	0	×
입법권	규칙제정권	×	×	0	0	×
자치	조세권	×	×	×	×	×
재정권	회 비	×	×	×	×	0
시행 사례		우리나라 읍면동 자치센터	프랑스 지구 위원회	영국 Parish (주민 150명↑)	영국 Parish (주민 150명↓)	일본 자치회
주요 활동		정부시책 전달, 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 생활 보호 등	주민의견 수렴 후 꼬뮨의회 전달			교통안전, 보건위생, 축제, 지역방재, 수익사업 등

4 외국사례의 시사점

- ① 주민자치조직의 목적 측면
 - 주요 외국은 지방자치·지방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주민자치조직을 설치·운영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읍·면·동은 시·군·구의 하부집행기관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활동범위에 국한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 주민자치조직의 설치 및 운영 필요
- ② 주민자치조직의 설치 측면
 - 주요 외국은 법령상 주민자치조직의 구성에 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자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자율적 구성
 - 또한, 인구 및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조직의 설치 단위가 非정형화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3~4개의 부락 또는 아파트단지·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조직도 활성화되어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면을 제외한 읍·동의 평균 주민수는 약 20,000명 수준 ↔ 영국은 인구 150명 기준

<우리나라 읍·면·동 및 통·리 평균 주민수 : 2011년 1월 현재>

	압	면	동	리(읍)	리(면)	통(동)
평균인구	20,981명	4,250명	19,845명	561명	179명	732명

자료: 행정안전부(2011).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읍·면·동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개수 제한 없이 아파트단지 (도시) 및 마을(농촌)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③ 주민자치조직의 구성 측면

- 영국과 일본은 주민자치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가운데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무보수 · 명예직 직원을 채용
-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업 부서 등의 조직체계 구성이 가능
-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무보수·명예직의 자원봉 사자로 구성된 부서 설치 고려

④ 주민자치조직의 재정 측면

- 주요 외국은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단순 보조금이 아닌 위임·위탁사무 수행의 대가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음
- 특히, 일본은 주민자치조직 구성원(주민)으로부터 매월 1세대당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입 예정인 주민자치회는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부터 일정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보전금)를 지원받아 재정을 충당
- 또한, 자체 수익사업(회비, 사용료, 서비스이용료 등), 기부금(주민 또는 기업의 기부금품 등)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
- 단, 회비 징수에 대해서는 자율로 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 * 일본의 일부 자치회들이 회비 강제징수 및 횡령 등을 통해 주민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⑤ 주민자치조직의 기능・역할 측면
 - 주요 외국의 주민자치조직 모두 관할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주로 자문기 구 및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영국과 일본은 관할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밀착형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수행하며, 프랑스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지방정부에 대한 전달 역할을 수행
 - 주민자치회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대한 자문·협의는 물론, 이들로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집행)해 나가도록 제도화

5. 주민자치회 구성 방안

① 주민자치회의 설치

- 읍·면·동의 행정구역 내에 인구 1만명(면은 인구 2천명) 기준으로 지역실정과 주민의사에 따라 복수의 주민자치회 설치 가능
 - → 다만, 주민자치회 관할 범위의 중첩은 불가
 - 도시지역 : 동 단위로 설치하되, 마을 및 주택(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1개 동 안에 1 개 주민자치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자치회 설치 가능
 - 농촌지역 : 원칙적으로 읍·면 단위로 설치하되, 마을 및 리(里) 등을 중심으로 1개 읍·면 안에 다수의 자치회 설치 가능
- 읍·면·동 사무에 대한 자문·협의·집행기구
 - 현재 읍·면·동사무소는 존치하되,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읍·면·동사무 자문·협의·집행

2 주민자치회의 기관구성

- 주민위원 : 회장·부회장·간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
 - 주민위원은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 가운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주민직선으로 선출
 - → 多득표 순서로 회장, 부회장 선출
 - * 다만, 현직 공무원인 자와 정당 소속인 등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주민은 공개모집 대 상에서 배제 및 제척(除斥)하도록 제도화
 - 주민자치회의 회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회장이 아닌 주민위원 가운데 1인을

간사로 임명 가능

- 주민위원(회장·부회장 포함)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를 확정하도록 함. 해당 시·군·구 선거관 리위원회의 주관 아래 투개표를 시행하고, 당선된 주민위원에게 '당선증' 교부하는 방식 중택일
- 이는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일선조직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 편에관한특별법」제22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의 개정 필요
- 주민위원의 지위 및 임기
 - 지위는 '무보수 · 명예직 봉사자'로 하며, 임기는 2년을 기준으로 연임 가능
 - 주민위원의 소속정당 또는 지지정당 표방 금지
- 주민감사 및 평가위원
 - 주민자치회장은 자체재원(회비·수익사업 등)과 기타재원(기부금품 등)에 관한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자체감사와 자체평가를 위해, 주민 가운데 평가 대상 분야별로 적합한 5~10인을 주민감사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매년 1회 주민감사와 평가회를 실시
 - * (예시) 주민 중 지역 내 전·현직 공직자 또는 교육자, 지역NGO회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주민감사 및 평가위원으로 선정
 - 주민감사 및 평가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이며(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가능), 임기는 1 년을 기본으로 연임 가능(연임시 주민자치회 동의 필요)

○ 자문위워

- 주민자치회의 관할 범위를 지역구로 하는 기초의회의원
- 시·군·구 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 경찰서장 및 파출소장, 초·중·고등학교장 또 는 교사, 소방서장, 대학 교수 및 박사 연구원 등 주민자치회 활동에 자문할 수 있는 주민
- 자문위원에게는 참고인 자격을 동시 부여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 • 협조뿐만 아니라, 각종 현황 • 현안에 관한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사무

- 기능:「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1조 제2항
 - 주민화합·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관계 법령·조례·규칙으로 위임·위탁한 사항
- 집행기능

구분	읍・면・동 → 주민자치회	시・군・구 → 주민자치회	자체 발굴(예시)
주 민 생활 편의 증진	○보안등 관리 ○마을대청소 ○산불·수해·재해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대형폐기물처리신청	○마을 휴양지 관리 ○마을안길 제설작업 ○마을 공공시설 관리·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단속	○마을홈페이지 구축·운영 ○마을공공차량 운영 ○카풀제도 장려 ○맞벌이가정 아동보호 ○마을어린이·청소년시설 및 사랑방 운영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안전지도
주민 공동체의 식 강화	○마을 주민자치활동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문 ○주민자원봉사단, 자율방범대 운영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홍보, 캠페인 활동	○마을 단합대회(마을축제, 체육대회) 추진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마을(이동)문고 육성・관리 ○청소년 보호계도 ○불우이웃돕기 ○지역환경감시체계 운영	○마을 유해시설 지도·단속 ○마을소외계층 보호 ○주민자치의식 및 애향심 고취 활동 ○주민총회 개최 ○다문화가정 보호 ○사회복지계층에 대한 1차적 관심·보호
주민 불편 해소	○ 주민생활 불편사항 접수 •건의 ○ 지역여론 수렴 및 전달 ○ 행정시책 전달 ○ 행정지원(주민상훈추천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접수 ·건의	○마을단체,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 감사 ○불법주차 신고

○ 자문·협의·심의기능

- 시·군·구 및 읍·면·동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예산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청구한 시·군·구에 대한 정책건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동네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읍·면·동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기능의 수행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주민 자치회와 사전 협의·심의하여야 함

4 주민자치회의 사업평가

- 지역주민에 의한 자체 사업평가주민총회 → 주민평가위원 선출 → 주민자치회 사업평가
- 사업평가는 '살기 좋은 마을(동네)'을 만드는데 주민자치회의 사업이 얼마나 기여 했는지에 대해 자체평가체제를 구축함
- 주민자치회에서 1년간 수행한 각종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소속 주민으로 구성 되는 '주민평가위원'에 의한 년 1회 활동평가 실시
 - 주민평가위원(5~10인)은 공개 모집된 소속 주민 가운데, 주민위원과 별도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직선으로 선출
 - * 다만, 현직 공무원인 자와 정당 소속인 등의 주민은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척
 - 주민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연임시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주민자치회장은 주민평가위원의 사업평가 결과를 주민총회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제출·보고
- 주민평가위원의 주민자치회 사업평가 결과에 대하여, 소속 주민은 주민자치회에 개선 및 주민위원 교체 등을 요구 가능
- 또한,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는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기 년도 위임 ·위탁사무 및 보조금의 증감을 통하여 해당 주민자치회에 보상·처벌을 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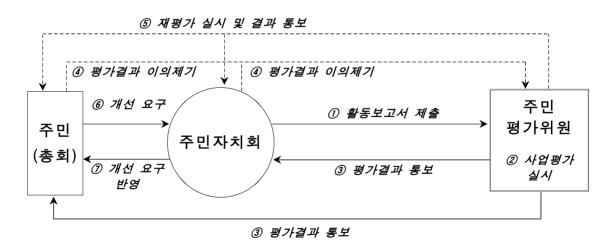
※ 주민평가위원의 주민자치회 사업평가 절차

- ① 활동보고서 제출 : 주민자치회는 사업평가 실시 15일 전까지 1년간의 모든 활동과 사업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평가위원에게 전달
- ② 사업평가 실시 : 주민평가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사업별로 자체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주민평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회가 작성·제출한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지표 예시 : 활동·사업별 당초목표 대비 실적, 주민만족도, 투입예산의 초과 여부, 주민참여율 등(필요시 현장방문평가 가능)
- ③ 평가결과 통보 : 주민평가위원은 평가결과가 도출된 즉시, 지역주민(주민총회 개최)과

주민자치회에 통보

- ④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주민자치회나 지역주민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결과가 통보된 지 7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 가능
- ⑤ 재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주민평가위원은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해당 주민자치회 및 주민(주민총회)에 통보
- ⑥ 평가결과 게시 및 활용
 -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자치회장은 7일 이내에 주민총회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주민에게 평가결과를 공지하고, 「사업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및 시·군·구, 시·도에 보고
 - 주민은 주민평가위원의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개선, 주민위원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적극 반영해야 함
 -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는 최종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기 년도 위임·위탁사무 및 보조금의 증감을 통해 간접적 보상·처벌 가능
 - 주민평가위원의 주민자치회 자체평가 결과는 추후 우수 주민자치회의 선정 및 주민자치 분쟁조정위원회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평가결과를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주민평가회의 주민자치회 사업평가 절차>



5 주민자치회의 재정감사

■ 지역주민에 의한 자체 재정감사주민총회 → 주민감사위원 선출 → 주민자치회 재정감사

- 자체 재정감사의 실시 이유는 주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주민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마을(동네)'을 구축하기 위함
- 주민자치회의 1년간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소속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감사 위원'에 의한 년 2회 재정감사 실시
 - 주민감사위원(3~5인)은 공개 모집된 소속 주민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평가 위원과 함께 주민직선
 - * 다만, 현직 공무원인 자와 정당 소속인 등의 주민은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척
 - 주민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연임시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주민감사위원의 재정감사는 년 2회(상반기/하반기) 정기 실시하되, 주민이나 주민총회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실시 가능
 - 주민자치회장은 주민감사위원의 재정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재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제출·보고
- 주민감사위원의 주민자치회 재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소속 주민은 주민자치회에 배상, 개선 및 주민위원 교체 등을 요구 가능
- 다만, 주민자치회의 의존재원에 관한 재정감사 결과에 대해 주민자치회나 주민(주민총회)의 불복・이의가 발생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감사담당관실 감사요청가능

※ 주민감사위원의 주민자치회 재정감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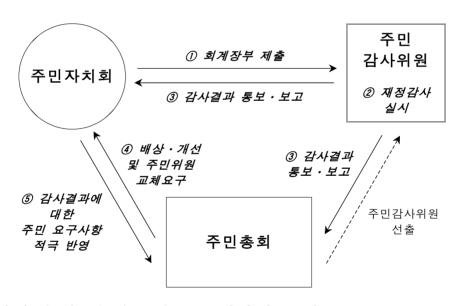
- ① 회계장부 제출 : 주민자치회는 재정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자체재원·의존재원·기타재 원에 관한 수입·지출 등의 재정운용내역 일체가 포함된 회계장부 원본과 사본(3~5부) 을 주민감사위원에게 제출
- ② 재정감사 실시 : 주민감사위원은 회계장부의 원본 및 사본을 토대로 재정운용의 적정성, 투명성, 건전성 등에 관한 재정감사 실시
- ③ 감사결과 통보 : 주민감사위원은 감사결과가 도출된 즉시, 지역주민(주민총회 개최)과 주민자치회에 통보
- ④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감사 실시
 - 주민자치회나 지역주민이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감사결과가 통보된 지 7일 이내에 주민감사위원에게 재감사 요청 가능

- 다만, 주민자치회의 의존재원(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등)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엄격한 재감사 실시(주민감사위원은 자체재원 및 기타재원에 관한 재감사만 실시)

⑤ 감사결과의 게시 및 활용

-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자치회장은 7일 이내에 주민총회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사결과 공지
- 주민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배상, 개선 및 주민위원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 주민감사위원의 (자체)감사 결과는 추후 우수 주민자치회의 선정 및 주민자치분쟁조정 위원회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시·군·구 및 시·도 에 보고

<주민감사위원의 주민자치회 재정감사 절차>



[6] 주민자치회 총회 및 읍·면·동 연합회 구성

- 주민자치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총회 구성
 - 주민자치회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사 에 입각한 운영이 필요
 - 이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의 회장·부회장 및 주민위원을 선출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간 긴밀한 의사소통의 장(場)으로 활용
 - 주민총회는 연 3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수시 개최

○ 주민자치회 사업부서 조직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위임·위탁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中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로 구성된 하위 사업부서 설치 가능
- 사업부서 활동자의 지위는 '무보수・명예직 봉사자'로 하되,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 가능(교통비, 식비 등)

○ 연합조직

- 주민자치회는 필요시 해당 읍·면·동에 존재하는 다른 주민자치회와 '(가칭)주민자치연 합회'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 가능

7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보조금 등 재정,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기술 등을 지원
-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자문위원으로서 역할 : 위원회의 운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 의원으로서 역할 : 시·군·구정의 현황 등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주민자치회(지역 주민) 의견을 시·군·구정에 반영

图 現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 역할·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
- 현행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가 관리·운영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입각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
- (예시) 도시와 농촌간 주민생활편의증진 관련 기능의 구분
 - 도시지역 주민자치회 : 마을공공차량(순번제 운행) 운영, 맞벌이가정 아동보호, 공원·놀이터 등 마을공공시설 관리 등
 - 농촌지역 주민자치회 : 각종 보조금 신청, 혼인·출생신고 대서, 영농자금 신청 및 주민 배정, 농약 공동구입·공급, 마을회관 운영 관리 등

⑨ 現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 역할·기능의 상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현행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주민자치회 회의공간 활용 가능)
 - 현행 교양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을 자치교육프로그램으로 대폭 전환하고, 주민자치회와 지역주민간 소통의 장(場)으로 재구성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입각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
 -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현재 이장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심으로 설정함 으로써 주민의 혼란 최소화 도모
- (예시) 도시와 농촌간 주민생활편의증진 관련 기능의 구분
 - 도시지역 주민자치회 : 마을공공차량(순번제 운행) 운영, 맞벌이가정 아동보호, 공원·놀이터 등 마을공공시설 관리 등
 - 농촌지역 주민자치회 : 각종 보조금 신청, 혼인·출생신고 대서, 영농자금 신청 및 주민 배정, 농약 공동구입·공급, 마을회관 운영 관리 등

6. 주민자치회와 시·도간 관계

1)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시 · 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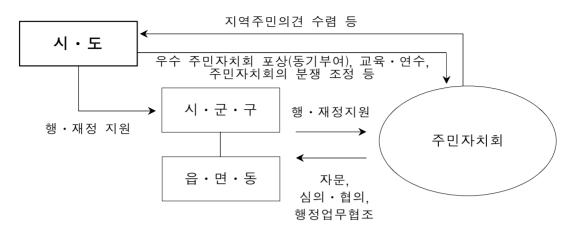
- □ 시·도 조례에 주민자치회 지원 규정 명시
 - 시·군·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지 원 필요
 - 시·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 차원 에서는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
 - 시·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군·구가 제공하기 어려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 시·도 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해외우수사례 보급,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교육기능 지원
 - 각 시·도 출연연구기관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과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민 자치조직 관련 해외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정보, 기술 등을 보급 활용토록 함
 - 또한, 주민위원 및 주민평가위원 등에 대한 워크샵, 단기 연수프로그램,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지원
- □ 우수 주민자치회에 대한 동기부여(motivation)
 - 시·도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체사업평가 및 주민자치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주민자치회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및 표창 등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 □ 읍·면·동과 주민자치회 사이에 분쟁 발생시, 일차적으로 시·군·구에 '(가칭)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합의·조정 유도
 -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불복할 경우,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분 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2) 시·도의 기대효과

-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방행 정에 자발적 협조와 관심 제고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역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함양
 - 주민자치회는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기능 수행
 - →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통해 정책의 성공가능성 제고
- □ 시·도 차원에서 표창 및 홍보 등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 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 우수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에서 표창장 수여, 홈페이지 게재 및 지역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홍보 지원

<시・도 - 시・군・구 - 주민자치회간 관계도>



3) 시·도 - 시·군·구 - 주민자치회간 역할 구분

- 시·도의 역할
 - 시·도 조례를 통한 주민자치회 지원
 - 시·도 연구기관을 활용한 주민자치 관련 각종 정보·지식·기술 제공 및 주민자치회 주민위원·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연수·워크샵 등 실시
 - 우수 주민자치회 사업발굴 표창,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동기부여
 - (가칭)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시·군·구 및 읍·면·동과 주민자치 회간 분쟁조정 등
- 시·군·구의 역할
 -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밀착형 행정사무의 위임 · 위탁
 - 위임·위탁재원에 대한 감사 및 주민의 요청에 의한 감사
 - 주민자치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입각한 조치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개발 및 집행 등
- 주민자치회의 역할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선도적 역할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읍·면·동 행정에 대한 협의·심의·자문
 - 시·군·구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보기
 - 지역주민간 화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 주민연대감 제고
 - 자체감사 및 평가(주민자치회) 그리고 외부평가(주민자치평가위원회)를 위한 보고서 작성·제출

○○시・도 조례 제 호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입각하여 소속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순수 주민자치조 직이므로, 시·도에서는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적절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동기부여해야 한다.
- 제3조(시·도지사의 역할) ①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주민자치회 주민위원, 주민평가위원, 주민감사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2. 우수 주민자치회 선정에 관한 사항
 - 3. 우수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도지사 표창장 수여, 시·도청 홈페이지 개제 등 주민자치회 활동의 동기부여에 관한 사항
 - 4. 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동의 지원과 장려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시·도 연구기관의 역할) ① 시·도 연구기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발전 적 활동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지휘 아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 행해야 한다.

- 1. 주민자치회에 대한 중・장기적 기본발전계획 수립
- 2. 주민자치조직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및 시사점 제공
- 3.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평가와 관련된 주민자치회의 주민위원, 주민평가 위원, 주민감사위원 등에 대한 교육
- 4. 시 · 도와의 협의 등 우수 주민자치회 선정과정 참여
-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주민위원, 주민평가위원, 주민감사위원의 활동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우수 주민자치회의 선정 및 포상) ① 시·도지사는 시·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동평가 결과와 재정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개의 최우수 주민자치회와 10개 이내의 우수 주민자치회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우수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시·도지사 명의의 표창장 수여, 시·도 홈페이지 게재 등의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포상에 관한 지원 내용은 각 시·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도지사는 주민자치회를 둘러싸고 발생되는 각종 갈등 및 분쟁상황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해당 갈등·분쟁의 이해당사자(또는 기관), 관련 분야 실·국장급 시·도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및 지역단체대표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갈등 및 분쟁 발생시에 한하여 구성・운영하며, 사안별로 위원 구성을 달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④ 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 1. 읍・면・동과 주민자치회간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 2. 시・군・구와 주민자치회간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 3.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간 갈등 · 분쟁의 중재 및 조정
- 4. 주민자치회 상호간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 7.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연합체간 갈등 · 분쟁의 중재 및 조정
- 8. 주민자치연합체 상호간 갈등 · 분쟁의 중재 및 조정
- 9. 그 밖에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갈등 · 분쟁의 중재 및 조정
- ⑤ 갈등 및 분쟁의 이해당사자(기관)는 주민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 과를 적극 수용하여,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